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17637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이 추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제43조의2제2항 등)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검인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1.의 다. (2). (가) 단서 신설]

3.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9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다. (2).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다. 첨부정보 (1) (생략)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 첨부정보 (1) (현행과 같음)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 ----- ----- ----- ----- ----- ----- . 다만, <u>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u>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